

발간번호 | 11-1543000-003401-01

# (가칭)스마트농업육성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

홍 성 민



# [가칭]스마트농업육성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 홍성민(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이춘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0. 3.



## 연구진

연구책임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내)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춘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연구원
심의위원			
연구협의를(자문)위원			
연구보조원	감대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백재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김재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가칭)스마트농업육성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0. 3.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계홍

# 목차

스마트농업육성지원  
특별법제정 연구용역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11

- 1. .... 13
- 2. .... 14

## 제2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참고 조문 / 00

- 제1절 내용 ..... 00
  - 1. 내용 ..... 00
  - 2. 내용 ..... 00
- 제2절 내용 ..... 00
  - 1. 내용 ..... 00
  - 2. 내용 ..... 00

## 제3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 0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제1장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취지
  - 농업·농촌 분야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라 농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침체 현상이 두드러져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업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대안으로 부상
  - 한편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계의 생산기술 발전단계 및 농업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과 영향 평가, 농업 현장기술 수요와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sup>1)</sup>
  -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스마트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며 일반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

1) 정영주·김태우,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 - 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9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14면.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검토 사항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앞서 스마트 농업 관련 정책 및 지원 근거였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등 관련 분야의 법률과의 관계, 규범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제2장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참고 조문



# 제2장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참고 조문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총 3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장은 5개 절로 세분화하고 총 37개 조문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함.

<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 및 조문

구분	제1장 총칙	
총칙	제1조(목적)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제2조(정의)	주요 개념(“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데이터”) 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밝힘
제2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무와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규정
	제6조(육성계획의 점검 및 평가)	육성계획의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근거와 활용,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도계획의 수립 등)	시·도지사의 시도계획 수립 권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 시도계획의 평가 등
	제8조(기타 스마트 농업 정책의 주체)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의 주체, 절차, 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제9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스마트 농업에 관한 실태조사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
제3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제1절 기반 조성		
기반 조성	제10조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	개별 농장 단위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 지원 근거 마련
	제11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의 지정 등)	스마트 농업 전문교육 등에 특화된 거점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
	제13조(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농업 지역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 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스마트 농업 촉진을 위한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내 시설 및 부지 임대에 대한 특례 규정
제2절 인력 육성		
인력 육성	제15조 (인력 육성 및 교육)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육성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권한의 위탁
	제16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기준 및 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교육협업)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제18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스마트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화	제19조(핵심기술 개발계획)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핵심기술 개발 지원)	핵심기술 개발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사업 등의 근거 조항
	제21조(표준화의 추진)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호환성과 품질보장을 위한 표준화 추진 근거
	제22조(표준의 보급)	스마트 농업 표준의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항
	제23조 (실증 및 검정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 실증과 스마트 농업 기업의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권한의 위탁
	제24조(판로 지원)	기업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권한의 위탁 등
	<b>제4절 데이터 수집 및 이용 활성화</b>	
데이터 활용 활성 화	제25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스마트 농업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무 등
	제26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표준화)	정부의 스마트 농업 데이터 표준화 지원과 정부 지원 사업 자의 표준 준수 의무, 정부의 시정 요구 권한 등 명시
	제27조(데이터 생산·수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데이터 생산 및 수집 권한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데이터 제공·활용·유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데이터 제공, 활용 및 유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제29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마트 농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권한의 위탁 등 규정
	제30조(데이터 센터의 설치)	데이터 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b>제5절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b>	
보급 및 확산	제31조(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	스마트 농업의 확산 및 보급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활동 근거
	제32조(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의 조성)	지역 단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관한 조항
	제33조(인·허가 등의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혹은 변경 승인)의 법적 효과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사항 등
	제34조(농업인 등의 준수 의무)	지원 대상 농업인 등의 데이터 제공, 사후관리 의무 등 규정
	제35조(국제협력의 촉진)	스마트 농업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과 저개발국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6조(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활동 근거
	제37조 (진흥원의 지정 등)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의 지정 및 설립, 기관 지원 등에 관한 규정
	<b>부칙</b>	
부칙	제1조(시행일)	시행일
	제2조(육성지구 조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경과규정

□ 제1조 목적

- 헌법 및 기존 법률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 규정에 근거
  -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7조에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에서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무관하지 않음.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2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 제2조 정의

-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 데이터 개념에 대한 정의

- 스마트 농업은 농업의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들이 이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의미한다고 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스마트 농업 데이터 개념에 대해 스마트 농업에 투입되거나 스마트 농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상, 환경 및 생육 상황 등을 나타내는 수치, 문자, 영상 등을 모아서 기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분류한 것을 의미함을 밝힘.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 농업 데이터”란 스마트 농업에 투입되거나 스마트 농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상, 환경 및 생육 상황 등을 나타내는 수치, 문자, 영상 등을 모아서 기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분류한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 바람직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이 요구됨.
- 유사한 사례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등이 있음.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의 국민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한편,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뒷받침할 전문 조직과 인력의 확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의 자생적 발달을 유도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함. 스마트 농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추진과 스마트 농업의 발전 상황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언적 성격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선언적 성격의 규정 형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8조 등의 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설치나 전문인력 배치 등을 명시한 예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연법」 제11조의3 등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8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연법 제11조의3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스마트 농업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됨을 밝힘.

-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후속 입법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관련 법령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5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등의 예와 같이 법률 제·개정상의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스마트 농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후속 입법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법(안)’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개정 한계를 명시하기보다 스마트 농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밝힘.
- 유사한 사례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서관법」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있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도서관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 농업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도서관법 제1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 수립·점검·평가

-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 법률에서 육성계획의 수립 목적, 주체, 주기,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법률로 정함.
- 스마트 농업 육성은 국가가 정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의 일관성, 통일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사항들을 육성계획에 포함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사한 정책 추진 체계의 예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기타 하향식 정책 추진 체계의 예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내지 제7조 등 참조).



- 육성계획의 이행 점검과 성과 평가를 행하고, 이를 진행 중인 육성계획과 차기 육성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육성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발전을 도모함.

#### ○ 시도계획의 수립·평가

- 시도계획은 육성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함.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맞추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유형의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수립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예도 있음(예를 들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5항).
- 시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법률에서 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이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
- 그밖에 시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정책의 기본 방향, 구체적인 정책 목표, 조세 감면 등 지원책, 자원 조달 계획 등 사항이 시·도지사 차원의 계획에 포함됨.

#### ○ 기타 스마트 농업 정책의 주체

- 농업인 기타 단체 등에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 주체와 수혜대상의 동일화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농업인 등에 의해 수립된 계획으로 동일 주체에게 지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생력·지속가능성 확보를 가능하게 함.
- 지원 주체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 등을 제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의 철회와 회수에 관한 규정을 둬.

- 진흥 관련 법제에서는 국가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철회나 회수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불법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벌 혹은 행정형벌로 규율하는 예도 있음.

○ 스마트 농업 실태조사

- 스마트 농업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태조사 규정이 필요함.
-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은 다양하며 법률마다 실태조사가 의무인지 아닌지, 실태조사의 주기 등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각 법률을 참고하여 스마트 농업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육성 중장기 지향점 2.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내지 제7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내지 제7조

조	내용	참고 조문
	<p>5. 스마트 농업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p> <p>6. 스마트 농업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7.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민간단체 및 법인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을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제6조(육성계획의 점검 및 평가)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육성계획의 추진상황이나 성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행 중인 육성계획을 수정하거나 다음 육성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p>	

조	내용	참고 조문
	<p>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p>	<p>①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계획을 평가하여 시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시도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3항</p>
<p>제8조(기타 스마트 농업 정책의 주체)</p>	<p>① 농업인, 기업, 민간단체 및 법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추진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2.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li> <li>3.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li> <li>4.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한 경우</li> </ol> <p>④ 제1항에 따라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의 요건,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9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9조</p>
<p>제9조(실태</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 스마</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p>

조	내용	참고 조문
조사)	<p>트 농업 육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 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공기관·민간단체·법인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⑤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p> <p>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p> <p>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p> <p>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p>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p>

#### □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 ○ 스마트 농업의 모델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내 스마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적 생육 모델이나 특정 서비스 모델이 개발·육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정부 주도의 모델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
- 타법 사례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2조 등이 있으나 스마트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거점단지를 지정하고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스마트 농업의 집약적 육성을 도모함. 특히 경북 상주, 전북 김제 등에 조성될 혁신밸리를 거점단지로 지정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함. 참고할 입법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가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
  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
  4.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
  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시장 기반의 스마트 농업 보

급 및 확산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관련 서비스(데이터의 수집·분석·제공, 농작물·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 산업을 육성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유사한 입법례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의무를 규정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의무를 명시한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스마트 농업 임대팜 등 공유재산의 임대 기간 및 임대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마련
- 거점단지, 육성지구 내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입법례로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10조(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별 농장 단위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2. 작물·축산물 재배·사육 방식의 자동화·무인화 3. 농축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4. 그 밖에 농가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2조
제11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 기자재 실증 등에 특화된 지역을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	내용	참고 조문
정 등)	<p>② 거점단지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양성</li> <li>2.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실증 지원</li> <li>3. 스마트 농업 데이터 생산·수집·활용</li> <li>4. 스마트 농업 실습 등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li> <li>5. 그 밖에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단지가 자립적 기반을 갖추어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거점단지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거점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⑥ 거점단지의 지정 요건·절차·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p> <p>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p>
제12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p>① 거점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점단지의 운영</li> <li>2. 거점단지 입주 농업인 및 기관 지원</li> <li>3.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li> <li>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li> <li>5.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li> <li>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li> </ol>	

조	내용	참고 조문
	<p>업</p> <p>7. 스마트 농업 기자재 실증 및 검인증 지원</p> <p>8.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제13조(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시장 기반의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분석·제공, 농작물·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p>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거점단지 및 제32조에 따른 육성지구 내 시설 및 부지에 대해 농업인, 기업 등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기업 등은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p>	관광진흥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조	내용	참고 조문
	<p>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p>	

□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 인력의 육성 및 교육 등

- 스마트 농업의 건전한 성장과 확산을 목표로 인력의 육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정원 등 산하기관에서 스마트 농업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닌 전문성을 활용하고, 해외 기관 등과도 협업하여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필요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한 사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고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농업인, 연관 사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스마트 농업 전반의 실적향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 등 유사한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음.

####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15조(인력 육성 및 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스마트 농업 관련 종사 인력을 육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조	내용	참고 조문
육)	<p>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 인력</li> <li>2.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경영 인력</li> <li>3. 스마트 농업 기자재 생산·유통 인력</li> <li>4. 농업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스마트 농업 관련 기초 인력</li> <li>4. 기타 스마트 농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법률 제12조 김치산업 진흥법 제12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p>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 및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li> <li>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li> <li>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li> </ol>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p>

조	내용	참고 조문
	<p>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li> <li>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ol> <p>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7조(교육협업)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해외교육기관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li> <li>2. 스마트 농업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3. 스마트 농업 학과 개설 및 학위 과정 개발·운영</li> <li>4. 기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li> </ol>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li> <li>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로 발굴된 농업인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li> <li>③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스마트 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li> </ol>	<p>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p>

□ 기술 개발 지원 및 표준화

## ○ 핵심기술 개발계획 및 지원

-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과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진흥법제에서는 연구개발계획을 입법하는 경우 크게 부처별 관장하는 산업 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에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방법(예를 들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과 특정 산업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연구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는데(예를 들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기상법」, 「문화재보호법」),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계획은 국내 기술 수준이 농업선진국에 비해 낮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농생명 에너지 자원 부분 등 핵심기술 부분이 다른 분야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후자의 예에 따라 육성계획에 포함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 표준의 개발, 확산

- 스마트 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과 이를 통해 농가와 기업이 상생·발전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표준을 제정하고 확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표준화의 추진과 표준의 보급이 필요함.
- 표준화 추진 및 표준의 보급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스마트 농업 표준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유사한 입법례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 제2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참고할 수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②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산업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실증, 기자재 검정, 판로 지원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 등 스마트 농업 관련 실증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시설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 스마트 농업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마트 농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시장과 판로를 넓히기 위한 활동 지원을 규정

##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19조(핵심 기술 개발 계획)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계획(이하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핵심기술 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의 현황과 전망</li> <li>2.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목표</li> <li>3.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전략</li> <li>4.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계획</li> <li>5. 기타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핵심기술 개발계획 마련 시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협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p> <p>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p> <p>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p>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p> <p>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p> <p>기상법 제5조</p> <p>문화재보호법 제6조</p>
제20조(핵심 기술 개발 지원)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 사업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p> <p>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p>
제21조(표준화의 추진)	<p>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의2</p> <p>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p>

조	내용	참고 조문
	<p>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에 대한 표준 개발</li> <li>2.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li> <li>2. 스마트 농업 표준 확산을 위한 신규 표준요소 발굴</li> <li>3. 기타 스마트 농업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③ 정부는 스마트 농업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관련 국제 표준 동향 및 정보 수집·제공</li> <li>2.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 활동 지원</li> <li>3. 기타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p>
제22조(표준의 보급)	<p>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관련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스마트 농업 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li> <li>2.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제작 지원</li> </ol>	

조	내용	참고 조문
	<p>3. 그 밖의 스마트 농업 표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제23조(실증 및 검정 지원)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술의 실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li> <li>2.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li> <li>3.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li> <li>4. 기타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축된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기업의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li> <li>2.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li> <li>3. 기타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p> <p>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2조</p> <p>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p>
제24조(판로 지원)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p>

조	내용	참고 조문
	1.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지원 2.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31조에 따라 실증 또는 검정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3

□ 데이터 수집 및 이용 활성화

○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등

- 스마트 농업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구축할 의무를 명시함. 동시에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부문별, 수준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
- 스마트 농업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컨설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수집, 데이터 제공·활용·유통 지원을 통해 데이터 유용성을 높이고 최적 생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참고할 만한 사례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

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 등이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관리와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및 센터의 설치

–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타 부처·기관 등의 플랫폼과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혁신밸리 내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설치 사업과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포함.

–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정부법」 제30조의3에서 관련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서 데이터 센터의 설치에 관한 입법례를 확인할 수 있음.

####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25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제공·처리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은 경영체, 품목, 지역 및 국가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p>	
제26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표준화)	<p>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이용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형태</li> <li>2.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방식</li> <li>3. 그 밖에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생산 또는 수집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는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정부는 데이터 표준에 맞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을 위하여 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p> <p>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 및 제43조</p>
제27조(데이터 생산·수집)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기반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생산·수집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p>	



조	내용	참고 조문
제28조(데이터 제공·활용·유통 지원)	<p>③ 제2항에 따라 농업인, 기업, 민간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제29조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제공 방식·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이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스마트 농업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데이터 분석 지원</li> <li>2.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li> <li>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li> <li>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자와 수요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제29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p>	<p>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p> <p>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p> <p>전자정부법 제30조의3</p>

조	내용	참고 조문
	<p>한다)의 장에게 데이터의 공유 등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플랫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운영 시 중앙행정기관등, 기업, 민간단체, 법인 등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⑥ 그 밖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제30조(데이터 센터의 설치)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생산·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

○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축

산물의 유통, 가공 및 소비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할 입법례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장 제9조 및 제17조 등이 있음.

#### ○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의 조성

- 온실, 노지, 축산 등 분야별 스마트 농장이 집적화된 지역을 조성·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지구 조성 계획 승인 혹은 변경 요청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자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행정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
- 유사한 사례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이 있음.

## ○ 농업인 등의 의무

- 스마트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기자재 AS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및 기업체로부터의 협력 사항을 규정
- 보통 의무 관련한 조항들은 비밀준수, 안전 관련 의무준수가 대부분임.
- 참고할 사례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광진흥법」 제18조의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등이 있음.

## ○ 국제협력의 촉진 및 수출 지원 등

- 수출을 제외한 ODA, 해외조사 등 관련 내용 규정과 스마트 농업 기자재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규정으로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두며, 스마트 농업 기자재, 설비, 기술 및 모델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 등의 규정을 입법례로 참고할 수 있으며, 수출 지원에 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인삼산업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을 입법례로 참고할 수 있음.

## ○ 스마트 농업 진흥원의 지정 등

- 스마트 농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등을 진흥원으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진흥원은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원기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지정, 설립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홍보
3. 농업경영체로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내용 및 참고 조문

조	내용	참고 조문
제31조(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li> <li>2. 스마트 농업 기자재·시설·장비 보급 지원</li> <li>3. 스마트 농업 창업 지원</li> <li>4. 스마트 농업 컨설팅 지원</li> <li>5.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나 지역에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및 소비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장 제9조 및 제17조</p>
제32조(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의 조성)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이때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란 기존 농업 방식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스마트 농업 임대 농장 등을 집적화 한 지역을 의미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육성지구 조성 취지·내용·운영방안·예산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육성지구 조</p>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p>



조	내용	참고 조문
	<p>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육성지구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정 한 방법으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실제 육성지구의 조성 또는 운영이 당초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⑥ 육성지구 조성 요건,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요건·절차,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절차, 육성지구 지원 중단 요건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33조(인·허가 등의 의 제)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2조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조성계획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3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신고·협의</li> <li>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li> <li>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li> </ol>	<p>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p> <p>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p> <p>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9조</p> <p>농어촌정비법 제106조</p> <p>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p> <p>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p> <p>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p>

조	내용	참고 조문
	<p>장허가</p> <p>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p> <p>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p> <p>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p> <p>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p> <p>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p> <p>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p> <p>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p>	

조	내용	참고 조문
	<p>13.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p> <p>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p> <p>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17.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p> <p>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p> <p>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p>	
제34조(농업인 등의 준수 의무)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인, 기업 등은 데이터 제공 및 실태조사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	내용	참고 조문
	<p>②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자재·설비 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기자재의 수리 및 사용 방법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관광진흥법 제18조의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p>
제35조(국제협력의 촉진)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 스마트 농업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이나 협력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관련 국제적 조사·연구</li> <li>2. 스마트 농업 관련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li> <li>3. 스마트 농업 관련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의 개최</li> <li>4. 스마트 농업 관련 해외 마케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li> <li>5. 그 밖에 스마트 농업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인삼산업법 제20조의2</p>
제36조(수출지원)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분야의 기자재, 설비, 기술 및 스마트 농업 모델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자문 및 교육</li> <li>2. 스마트 농업 기술, 디자인, 품질 및 성능의 개발·향</li> </ol>	

조	내용	참고 조문
	<p>상</p> <p>3. 스마트 농업 기업 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p> <p>4. 스마트 농업 기업의 무역 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p> <p>5. 기타 스마트 농업 분야 수출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제37조(진흥원의 지정 등)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법인 등을 스마트 농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출연하여 신규로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출연하여 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스마트 농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li> <li>4. 스마트 농업 보급에 관한 사항</li> <li>5. 스마트 농업 기자재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스마트 농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7. 스마트 농업 정책 수립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지시 또는</p>	<p>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p>

조	내용	참고 조문
	<p>명령을 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농업 진흥원 지정요건·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3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3장

#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연관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 농업 데이터”란 스마트 농업에 투입되거나 스마트 농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기상, 환경 및 생육 상황 등을 나타내는 수치, 문자, 영상 등을 모아서 기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마트 농업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체계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 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육성 증장기 지향점
2.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농업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민간단체 및 법인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을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계획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육성계획의 추

진상황이나 성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행 중인 육성계획을 수정하거나 다음 육성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계획을 평가하여 시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시도계획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스마트 농업 정책의 주체) ① 농업인, 기업, 민간단체 및 법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4.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스마트 농업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의 요건, 절차, 제2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 등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 농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민간단체·법인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 제1절 기반 조성

제10조(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별 농장 단위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2. 작물·축산물 재배·사육 방식의 자동화·무인화
3. 농축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4. 그 밖에 농가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 교육, 기자재 실증 등에 특화된 지역을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거점단지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양성
  2.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실증 지원
  3. 스마트 농업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4. 스마트 농업 실습 등을 위한 임대 농장 운영
  5. 그 밖에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단지가 자립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거점단지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거점단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거점단지의 지정 요건·절차·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거점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거점단지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점단지의 운영
  2. 거점단지 입주 농업인 및 기관 지원
  3.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스마트 농업 기자재 실증 및 검인증 지원

8.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시장 기반의 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분석·제공, 농작물·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거점단지 및 제32조에 따른 육성지구 내 시설 및 부지에 대해 농업인, 기업 등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기업 등은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의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절 인력 육성

제15조(인력 육성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스마트 농업 관련 종사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 인력
2.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경영 인력
3. 스마트 농업 기자재 생산·유통 인력
4. 농업계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스마트 농업 관련 기초 인력
4. 기타 스마트 농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 및 역량을 갖춘 교육 기관을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
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육협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해외교육기관 등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기술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스마트 농업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3. 스마트 농업 학과 개설 및 학위 과정 개발·운영
4. 기타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로 발굴된 농업인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스마트 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3절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제19조(핵심기술 개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계획(이하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핵심기술 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목표
3.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전략
4.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 지원계획
5. 기타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핵심기술 개발계획 마련 시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정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협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핵심기술 개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기술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 사업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화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에 대한 표준 개발
2.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2. 스마트 농업 표준 확산을 위한 신규 표준요소 발굴
3. 기타 스마트 농업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정부는 스마트 농업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국제 표준 동향 및 정보 수집·제공
2.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 활동 지원
3. 기타 국내 스마트 농업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표준의 보급) 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관련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표준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스마트 농업 표준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
2. 스마트 농업 표준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제작 지원
3. 그 밖의 스마트 농업 표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실증 및 검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술의 실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2.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3.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기타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축된 스마트 농업 기술 실증에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시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기업의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과 연계한 컨설팅 지원
3. 기타 스마트 농업 기자재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판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지원
  2.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제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31조에 따라 실증 또는 검정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4절 데이터 수집 및 이용 활성화

제25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제공·처리 등에 필요한 물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은 경영체, 품목, 지역 및 국가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스마트 농업 데이터 표준화) ① 정부는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이용 및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형태

## 2. 스마트 농업 데이터 수집 방식

3. 그 밖에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 지원을 받아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생산 또는 수집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는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데이터 표준에 맞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을 위하여 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기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데이터 생산·수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기반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생산·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인, 기업, 민간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8조(데이터 제공·활용·유통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제29조의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제공 방식·범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법인 등이 스마트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스마트 농업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분석 지원

2.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확산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자와 수요자 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중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데이터의 공유 등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플랫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데이터 플랫폼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운영 시 중앙행정기관등, 기업, 민간단체, 법인 등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데이터 센터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데이터의 생산·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5절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

제31조(스마트 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의 확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의 보급
2. 스마트 농업 기자재·시설·장비 보급 지원
3. 스마트 농업 창업 지원
4. 스마트 농업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가나 지역에 스마트 농업을 보급하는 경우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및 소비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2조(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이때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란 기존 농업 방식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 스마트 농업 임대 농장 등을 집적화 한 지역을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육성지구 조성 취지·내용·운영방안·예산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육성지구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실제 육성지구의 조성 또는 운영이 당초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또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육성지구 조성 요건,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요건·절차,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절차, 육성지구 지원 중단 요건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2조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조성계획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3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이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신고·협의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接道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2.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 13.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구역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17. 「하수도법」 제6조·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승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4조(농업인 등의 준수 의무)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인, 기업 등은 데이터 제공 및 실태조사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자재·설비 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기자재의 수리 및 사용 방법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5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단체 등과 스마트 농업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과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이나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국제적 조사·연구
2. 스마트 농업 관련 인력·정보의 국제 교류
3. 스마트 농업 관련 전시회·학술대회·경진대회의 개최
4. 스마트 농업 관련 해외 마케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스마트 농업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6조(수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분야의 기자재, 설비, 기술 및 스마트 농업 모델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자문 및 교육
2. 스마트 농업 기술, 디자인, 품질 및 성능의 개발·향상

3. 스마트 농업 기업 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4. 스마트 농업 기업의 무역 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5. 기타 스마트 농업 분야 수출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진흥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스마트 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법인 등을 스마트 농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출연하여 신규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출연하여 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 농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 농업 인력 육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농업 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농업 기자재 유통·수출·관로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농업 정책 수립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진흥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스마트 농업 진흥원 지정요건·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성지구 조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있거나 이미 조성한 육성지구에 대해서는 조성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